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문화재 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(안 제17조제1항) 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

-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(10만원)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 22. ~ 2015. 11. 11.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단,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과태료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한다. <단서 신설>	제17조(과태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단,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